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(시정지시서)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8. 31.

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



- 1. 건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
- 2.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 및 공사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퇴직공제부금 미납액	공시송달 내용
대천건축(주) (광주광역시 중외근린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ALC블록)	1101-11-0*****-	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, C동 723호 (문정동)	이**	2025.12월분 공제부금 3,172,000원	2026. 9. 14.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지시 (기한 내 미납시 과태료 부과 예정)
				2026.2월분 공제부금 1,950,000원	
				2026.2월분 공제부금 1,001,000원	

- 4. 공고기간: 2026. 8. 31. ~ 2026. 9. 14.
- 5.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이희라(062-975-643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